

1. 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8.17)으로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일(’22.8.18)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대상기기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형식승인 대상 기기 명확화(별표 1호의2 신설)
- 나.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매체별 성능인증 기준 등 규정(제6조의5 신설)
- 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 방법·시기 등 규정(별표 9의2 신설)
- 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분석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세부 측정정보 등 규정(별표 11의4 신설)
- 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신설, 물가 상승분, 제도 개선사항 등 반영하여 기존 수수료 금액 조정(별표 1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내부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내부구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존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부착하여야”를 “붙여야”로,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을 각각 “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 소프트웨어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이하 “측정기기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을~~”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로, “인정~~하면~~”을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측정기기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형식승인 연월일(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승인 취소일도 공고한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사실이나 별도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1년간 유효기

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5항**”을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신제품이 다음**”으로, “**고려하여**”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으로,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성능시험 방법을 정해야**”를 “**위한 기준과 방법(성능시험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검사기관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필요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기기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포함한 예비성능시험 성적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성적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해당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 성적서를 검토하여 해당 신제품이 예비형식승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의2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란 별표 2의3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②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성능인증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諸元)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해당 등급을 포함한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별표 2의5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잘 보일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⑤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 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1. 공개하려는 측정 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⑧ 그 밖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 방법, 성능인증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 및 성능인증 관련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정도검사기간은**”을 “**정도검사주기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때 정도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도검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에 따른”을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제11조제2항 중 “제10조제2항”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정도검사나”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나”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측정대행업의 세부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을 “영 제12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2조제1항제3호”를 “영 제12조 제2항”으로, “일부 장비”를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3(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시기는 별표 9의2와 같다.

1. 삭 제

2. 삭 제

제17조제2항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6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 외의 시험·검사기관: 영 제14조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1.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제3장에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법 제18조의5 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의4와 같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호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 별표 2의4 및 별표 2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2 및 1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및 별지 제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6서식 및 별지 제5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검정 또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등(제2조 관련)

1. 자동차 분야

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 1) 동력흡수장치, 부하 측정장치, 공기유량 측정장치, 연료유량측정장치 및 교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2) 동력흡수장치, 관성중량 부여장치, 롤러장치, 주행거리 측정장치, 운전모드 보조장치, 송풍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3) 시료채취장치, 기록계, 교정장치, 컨버터 효율 측정장치 및 배기가스 분석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동기동력계용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메탄·암모니아만 해당한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 4) 밀폐실, 분석기, 기록장치, 환기용 송풍기 및 혼합용 송풍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증발가스(탄화수소만 해당한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 5) 배출가스 희석터널, 채취부, 무게측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6) 시료채취장치, 배기가스 유량계, 교정장치, 배기가스 분석기,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대기온도 및 압력센서, 엔진 제어 데이터 수집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 1) 동력흡수장치, 관성중량 부여장치, 자동차 바퀴 회전에 따른 롤러장치, 주행거리 측정장치, 운전모드 보조장치 및 시험용자동차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용 송풍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2) 시료채취장치, 기록계, 교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산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3) 배출가스 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로 구성된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만 해당한다) 분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4) 배출가스 채취부, 광원부, 수광부, 농도지시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5) 매연도를 녹화, 재생하기 위한 렌즈, 필터교환장치, 흑백상태 자동조절장치, 감도선택장치, 조리개자동조절장치, 테이프구동장치(메모리카드 포함), 헤드기구장치, 오동작방지장치, 입력 및 출력단자장치, 마이크 부착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 6) 광원감지기(SDM, Source Detector Module), 반사거울(CCM, Corner Cubic Mirror), 속도 및 가속도 측정기, 주제어장치, 카메라, 교정장치, 이동차량 등으로 구성된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 대기 분야

- 가. 배출가스 채취부, 전처리부, 분석부, 지시·외부 출력부, 교정부 등으로 구성된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총 탄화수소·산소에만 해당한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나. 배출가스 채취부, 전처리부, 분석부, 지시·외부출력부, 교정부 등으로 구성된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산소·먼지에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다. 시료채취부, 분석부, 지시·외부출력부, 교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이산화황·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오존·먼지)에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흡인노즐, 흡인관, 피토크, 여과지홀더, 여과부가열장치(2형인 경우), 임핀저트레인, 가스흡인 및 유량측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3. 수질 분야

가. 센서부, 전극, 전극 보호구, 변환기, 세정장치, 자동채수장치, 제어부, 지시·외부출력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용존 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계량부, 반응부, 가열부, 적정부, 교반부, 검출부, 변환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지시·외부출력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다. 검출부, 반응부, 계량부, 시료보급부, 제어부, 지시·외부출력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계량부, 반응부, 검출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지시·외부출력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마. 계량부, 반응부, 검출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지시·외부출력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바. 시료도입부, 무기 탄소 제거부, 반응 검출부, 운반기체 공급부, 주입부, 산화반응부, 시료 및 증류수 보급부, 시약 저장부, 제어부, 지시·외부출력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사. 센서부, 전극, 제어부, 지시·외부출력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소이온농

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아. 시료도입부, 측정부, 검출부, 제어부, 지시·외부출력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4. 먹는물 분야

가. 지시장치, 검출장치 등으로 구성된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지시장치, 검출장치 등으로 구성된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5. 소음·진동 분야

가. 마이크로폰, 레벨레인지절환기, 교정장치, 청감보정회로, 동측성조절기, 출력단자, 지시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나. 진동픽업, 레벨레인지 절환기, 교정장치, 감각보정회로, 출력단자, 지시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6. 토양 분야

누출측정기, 온도계 및 데이터 분석장치, 압력계, 온도계, 가압장치, 감압장치, 안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7. 실내공기질 분야

가. 흡인펌프, 유량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총부유세균·부유곰팡이만 해당한다)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나. 시료채취부, 분석부, 지시·외부출력부, 교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

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라돈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8.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분야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 (제4조 관련)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

제 작 회 사 :	기기 형식 :
형식승인번호 :	형식승인일 :
기기고유번호 :	수입신고일 :

- 비고 : 1.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90mm×세로 40mm로 한다. 다만, 소음계의 형식승인표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刻印)으로 한다.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분야

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원동기동력계는 원동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용 원동기를 시험운전모드로 운전하여 제어하는 것으로서, 회전축에 부하를 부여하는 제동부와 지시부, 회전속도 지시부, 연료유량 지시부, 공기유량 지시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원동기의 모든 속도에서 부여되는 부하와 원동기의 회전속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상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동력흡수장치, 관성중량부여장치, 자동차 바퀴 회전에 따른 물리장치, 주행거리 측정장치, 운전모드 보조장치 및 시험용 자동차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용 송풍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주행모드로 운전할 때 도로부하력 등을 부여하고 제어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원동기동력계·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기록계,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 또는 차대동력계의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메탄, 이산화탄소 등을 채취하여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수소염이온화법(Hydrogen Flame Ionization Detector)에 따른 탄화수소 분석기로 밀폐실 내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밀폐실 내의 탄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측정범위를 가져야 하며 증발가스 분석기에서 나오는 출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 장치를 가져야 한다.

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 희석터널, 채취부, 무게측정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 또는 입자개수를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배기가스 유량계, 교정장치, 배기가스 분석기,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대기온도 및 압력센서, 엔진 제어 데이터 수집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를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차대동력계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상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동력흡수장치, 관성중량부여장치, 자동차 바퀴 회전에 따른 톨러장치, 주행거리 측정장치, 운전모드 보조장치 및 시험용 자동차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용 송풍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주행모드로 운전할 때 도로부하력 등을 부여하고 제어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기록계,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 또는 차대동력계의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산소, 공기과잉률 등을 채취하여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공기과잉률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기는 배출가스 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를 비분산형적외선 방법으로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공기과잉률 측정기는 휘발유, 가스 및 알콜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및 산소 등을 비분산적외선방법(산소는 자기식 및 전기화학식방법)으로 측정하여 공기과잉률을 계산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채취부, 계측부, 농도지시부 등을 갖추어야 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매연농도를 광반사식방법 또는 부분유량채취식·광투과식방법으로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5)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렌즈, 필터교환장치, 흑백상태 자동조절장치, 감도선택장치, 조리개자동조절장치, 테이프구동장치, 헤드기구장치, 오동작방지장치, 입력 및 출력단자장치, 마이크 부착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배출하는 매연도를 녹화·재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광원감지기, 반사거울, 속도 및 가속도 측정기, 카메라, 주제어장치,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매연 등을 운행 중인 자동차와 접촉하지 아니하고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대기 분야

가.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 채취부, 전처리장치,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데이터 출력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굴뚝 등의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총탄화수소 및 산소를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 채취부, 전처리장치, 분석부와 데이터처리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굴뚝배출

가스 중 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산소·먼지 및 배출가스유속 등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대기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부, 분석부, 지시·기록부,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대기 중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및 먼지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1) 먼지시료채취장치는 흡인노즐, 흡인관, 피토크(pitot tube: 기체나 액체의 흐르는 속도를 구하는 장치), 여과지홀더, 여과부가열장치, 임핀저트레인, 가스흡인 및 유량측정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자동식시료채취장치는 자동 등속흡인제어부, 유량자동제어밸브, 측정데이터기록부 등을 갖추어 등속흡인량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굴뚝 등의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가스시료채취장치는 시료채취부, 임핀저트레인, 연결관, 시료장치, 가스시료흡수병 그리고 가스흡인 및 유량측정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굴뚝 등의 배출가스 중 가스상물질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수질분야

용존산소·화학적산소요구량·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총 질소·총 인·총 유기탄소·

수소이온농도·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시료·시약의 계량부, 반응조, 가열기, 교반기, 적정기, 검출기, 변환기, 시약저장부 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폐수 및 하천, 호소 등 공공용수역에서 물의 용존산소, 화학적 산소요구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총 질소량, 총 인량, 총 유기탄소농도,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량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먹는물 분야

가. 탁도 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검출기, 광원, 시료조, 지시·기록부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여과수 및 정수 등의 탁도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송출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잔류염소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전극, 전극보호구, 변환기, 지시·기록부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정수 및 배수지수 등의 잔류염소를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여 원격자동감시체계 등에 송출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5. 소음·진동 분야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레벨렌지변환기, 교정장치, 청감보정회로, 동특성조절기, 출력단자, 지시계 등을 갖추어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진동픽업, 레벨렌지 변환기, 교정장치, 감각보정회로, 출력단자, 지시계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6. 토양분야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액상부 누출측정기기는 누출측정기, 온도계, 데이터 분석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고, 기상부 누출측정기기는 압력계, 온도계, 가압장치, 감압장치, 안전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저장시설의 누출량을 측정하여 액량변화를 관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7. 실내공기질 분야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흡입펌프, 유량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실내공기 중 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총 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를 용이하게 포집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실내공기 중에
미세먼지 · 일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 오존 · 이산화질소 및 라돈의 농도를 자동
측정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구조 · 성능의 세부기준
과 변경승인의 세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비형식승인표(제6조의4제1항 관련)

제 작 회 사 :	기 기 형 식 :
예비형식승인번호 :	예비형식승인일 :
기기고유번호 :	수입신고일 :
※ 본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입니다.	

- 비고 : 1.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90mm×세로 40mm로 한다. 다만, 소음계의 형식승인표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刻印)으로 한다.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제6조의5제1항 관련)

1.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다음 각 목의 측정기기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대기 분야 측정기기

- 1) 이산화질소 측정기기
- 2) 일산화탄소 측정기기
- 3) 오존 측정기기

나. 수질 분야 측정기기

- 1) 용존산소 측정기기
- 2)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기

다. 먹는물 분야 측정기기

- 1) 탁도 측정기기
- 2) 잔류염소 측정기기

라. 소음 측정기기

마.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기기

- 1) 이산화탄소 측정기기
- 2) 라돈 측정기기

바. 그 밖에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

2. 제1호가목에서 바목까지의 측정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성능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정기기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측정기기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 측정기기의 성능인증 기준·시험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가 아니어야 한다.

나.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는 측정기기가 아니어야 한다.

다. 대기(待期), 오작동 등 작동상태가 표시되는 측정기기여야 한다.

라. 특정 제품(공기청정기, 청소기 등)에 보조적으로 설치된 측정기기(또는 센서)가 아니어야 한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기준(제6조의5제3항 관련)

1. 대기 분야 측정기기(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	세부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5.00 %	≤ 15.00 %	≤ 20 %
등급외	> 5.00 %	> 15.00 %	> 20 %

2. 수질 분야 측정기기

가. 용존산소 측정기기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	세부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온도보상(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2.5%	≤ 5.0%	≤ 20 %
등급외	> 2.5%	> 5.0%	> 20 %

나.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기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	세부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0.1 pH	≤ 0.2 pH	≤ 20 %
등급외	> 0.1 pH	> 0.2 pH	> 20 %

3. 먹는물 분야 측정기기

가. 탁도 측정기기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	세부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2.0 %	≤ 5.0%	≤ 20 %
등급외	> 2.0 %	> 5.0%	> 20 %

나. 잔류염소 측정기기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	세부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2.0 %	≤ 5.0 %	≤ 20 %
등급외	> 2.0 %	> 5.0 %	> 20 %

4. 소음 측정기기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	세부 평가항목			
	표준입사각응답(실내)	응답시간(실내)	절환오차(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아래 Table 1	≤ 3 초	≤ 1.0 dB	≤ 15.0 %
등급외	참조	> 3 초	> 1.0 dB	> 15.0 %

Table 1. 소음 간이측정기 표준입사각응답 기준

공칭주파수(Hz)	표준입사각응답 허용오차	
	1등급	등급 외
31.5	$\leq \pm 4.0$	$> \pm 4.0$
63	$\leq \pm 3.0$	$> \pm 3.0$
125	$\leq \pm 2.5$	$> \pm 2.5$
250	$\leq \pm 2.3$	$> \pm 2.3$
500	$\leq \pm 2.3$	$> \pm 2.3$
1,000	$\leq \pm 2.0$	$> \pm 2.0$
2,000	$\leq \pm 3.0$	$> \pm 3.0$
4,000	$\leq \pm 4.0$	$> \pm 4.0$
8,000	$\leq \pm 7.0$	$> \pm 7.0$

5.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기기

가. 이산화탄소 측정기기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	세부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leq 5.0 \%$	$\leq 5.0 \%$	$\leq 20 \%$
등급 외	$> 5.0 \%$	$> 5.0 \%$	$> 20 \%$

나. 라돈 측정기기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	세부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leq 20 \%$	$\leq 20 \%$	$\leq 20 \%$
등급 외	$> 20 \%$	$> 20 \%$	$> 20 \%$

비고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은 세부 평가항목별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 실내 시험 항목 중 등급 외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실외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성능인증 등급을 등급 외로 판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은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의 측정기기 중 성능인증 등급이 1등급으로 판정된 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가.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표지(제6조의5제4항 관련)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표지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기기(모델)명칭/최초 제조일자

나. 측정 분야/항목(예시: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다. 성능인증 등급/성능인증 번호/성능인증 일자

라. 해당 측정기기에 대해 제6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검사기관

2. 성능인증 등급표지 도안은 아래와 같으며, 크기와 기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국립
환경과학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품명/최초 제조일자 :
(측정분야/항목)	성능인증 번호/인증 일자 :
(성능인증 등급)	검사기관 :

비고

1. 성능인증 등급표지의 재질은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2. 성능인증 등급표지에 표기되는 글자가 지워지지 않게 인쇄 또는 각인한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
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분야별로 위반 횟수
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근 1
년 내에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인 경우
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1) 지정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 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	경고	경고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서, 정도검사성적 서 또는 검정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지정취소			
가)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취소			
다)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시설 및 장비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6) 법 제14조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지정취소			

비고: 3)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 등 (제15조의3 관련)

1.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측정대행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 1)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 2)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 다.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설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2. 측정대행업자는 제1호의 자료를 해당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세부내용(제17조의7 관련)

1. 환경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전산처리기구(「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를 지정·관리한다.
2. 제1호의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시스템 운영, 개선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업무
 - 나. 시스템 장애 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과 관련된 업무
 - 다. 시스템 사용 방법 교육과 관련된 업무
 -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3.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7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 가. 영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장과의 측정대행계약 관련 정보
 - 나.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시료채취 지점별 위치정보 및 시료채취 시점 등)
 - 다.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제17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록부에 기록한 내용, 측정대행 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제원 등)
 -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측정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정보, 측정대행 표준계약서 및 계약 변경 내용, 시설·장비 사용 또는 차량 운행일지 등)

비고

1. 측정대행업자는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이름·소속·직급·전화번호 등 신청인 정보와 사업자 등록증 및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시스템의 사용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측정대행업자는 제4호가목에 따른 측정대행계약 관련 정보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측정대행업자는 제4호나목과 다목에 따른 정보를 해당 측정분석을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천재지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인해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로부터 제4호 각 목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제출받고 시스템 복구 후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검정 및 간접측정기기 성능인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1. 성능시험·정도검사 수수료

분 야	대 상 기 기	수수료(원)	
		성능시험	정도검사
가. 자동차 분야	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861,000	361,000
	나)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1) 4륜차용	869,000	401,000
	(2) 2륜차용	869,000	468,000
	(3) 삭제 <2018. 3. 29.>		
	(3) IM240 배기유량 직접 측정방법	2,612,000	434,000
	다)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1) 원동기 동력계용	1,076,000	466,000
	(2) 차대 동력계용(4륜차용)	1,185,000	466,000
	(3) 차대 동력계용(2륜차용)	1,229,000	549,000
	(4) 삭제 <2018. 3. 29.>		
	(4) IM240 배기유량 직접 측정방법	1,280,000	346,000
	(5) 암모니아 측정장치	1,039,000	588,000
	라)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1,269,000	789,000
	마) 입자형태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차대 및 원동기 동력계용(전체용)	642,000	323,000
	(2) 원동기 동력계용(부분 채취식용)	1,063,000	423,000
	(3) 입자개수 측정장치	1,957,000	325,000
	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2,382,000	1,022,000
	2)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813,000	305,000
	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경유차 외)	1,493,000	283,000
	다) 차대동력계용 경유차 질소산화물 분석기	1,183,000	267,000
	라)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일산화탄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00,000	84,000
	(2) 탄화수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55,000	84,000
	(3)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837,000	100,000
	(4)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혼합형)		85,000
	라)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여지반사식	941,000	88,000
	(2) 광투과식	1,160,000	233,000
	마)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528,000	115,000
	바)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입자상	1,684,000	486,000
	(2) 가스	7,052,000	1,489,000
나. 대기 분야	1)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산소와 총탄화수소 측정기기	1,099,000	244,000
	(나)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1,321,000	297,000
	2)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1,269,000	1,087,000
	※ 현장적용계수(상대정확도) 시험을 제외한 최초 정도검사		543,000
	(나) 가스	1,595,000	1,024,000
	※ 현장적용계수(상대정확도) 시험을 제외한 최초 정도검사		543,000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1,917,000	1,483,000
	※ 현장적용계수(상대정확도) 시험을 제외한 최초 정도검사		661,000
	(라) 유속계	1,271,000	592,000
	3) 대기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미세먼지(PM-10)	1,180,000	701,000
	(나) 초미세먼지(PM-2.5)	1,180,000	701,000
	(다) 이산화황	1,417,000	746,000
	(라) 질소산화물	1,417,000	746,000
	(마) 일산화탄소	1,417,000	746,000
	(바) 오존	1,417,000	746,000
	4)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입자상	1,069,000	644,000
	(나) 가스	693,000	542,000
	5) 대기 환경질 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미세먼지(PM-10)	1,590,000	789,000
	(나) 초미세먼지(PM-2.5)	1,590,000	789,000
다. 수질 분야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020,000	473,00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864,000	956,000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976,000	988,000
	4)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563,000	956,000

	5)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563,000	956,000
	6)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888,000	960,000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400,000	732,000
	8)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427,000	786,000
라. 먹는물 분야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90,000	602,000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92,000	603,000
마. 소음·진동 분야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나) 소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065,000 2,418,000	98,000 364,000
	2)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1,068,000	100,000
바. 토양 분야	1)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액상부)	3,199,000	2,067,000
	2)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기상부)	503,000	403,000
	3)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113,000	3,891,000
사. 실내공기질 분야	1)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 챔버시스템) (나) 실내공간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다)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라) 실내공간오염물질(석면, 총부유세균, 부유 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1,489,000 827,000 845,000 845,000	957,000 217,000 300,000 300,000
	2)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삭제 (가)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실내공간오염물질(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다) 실내공간오염물질(오존)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실내공간오염물질(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마) 실내공간오염물질(라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80,000 1,417,000 1,417,000 1,417,000 1,417,000 1,417,000 990,000	701,000 746,000 746,000 746,000 746,000 746,000 587,0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 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4.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2. 검정수수료

교 정 용 품	수수료(원)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1항목 기준)	59,300
나.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1매 기준)	13,300
※ 검정된 교정용품을 공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23,200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1개 기준)	47,400
라. 매연 포집용 여과지 원형(100매/1박스 기준)	2,400
※ 검정된 교정용품을 공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6,400
마. 매연 포집용 여과지 롤(50 m/1롤 기준)	4,800
※ 검정된 교정용품을 공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17,1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3.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성능시험 수수료

분 야	대 상 기 기	수수료(원)	
		성능시험(살내)	성능시험(실외)
가. 대기 분야	1) 이산화질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670,000	2,336,000
	2) 일산화탄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637,000	2,336,000
	3) 오존 측정용 간이측정기	649,000	2,336,000
나. 수질 분야	1) 용존산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741,000	1,647,000
	2) 수소이온농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1,040,000	1,647,000
다. 먹는물 분야	1) 탁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1,289,000	1,647,000
	2) 잔류염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1,289,000	1,647,000
라. 소음·진동 분야	소음 측정용 간이측정기	638,000	1,507,000
마. 생활환경 분야	1) 이산화탄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864,000	2,336,000
	2) 라돈 측정용 간이측정기	722,000	2,286,0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성능시험(실외) 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자동차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토양 [] 먹는물 [] 실내공기질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⑤ 제작사	⑥ 제작국
	⑦ 기기명칭	⑧ 형 식
	⑨ 상품명(고유명칭)	⑩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⑪ 최소눈금(단위)	⑫ 공인측정오차범위 ±
	⑬ 측정방법 및 원리	
	⑭ 변경내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승인 [] 또는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에 한함)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라.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 소프트웨어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라.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 소프트웨어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	수수료 신청시에는 없음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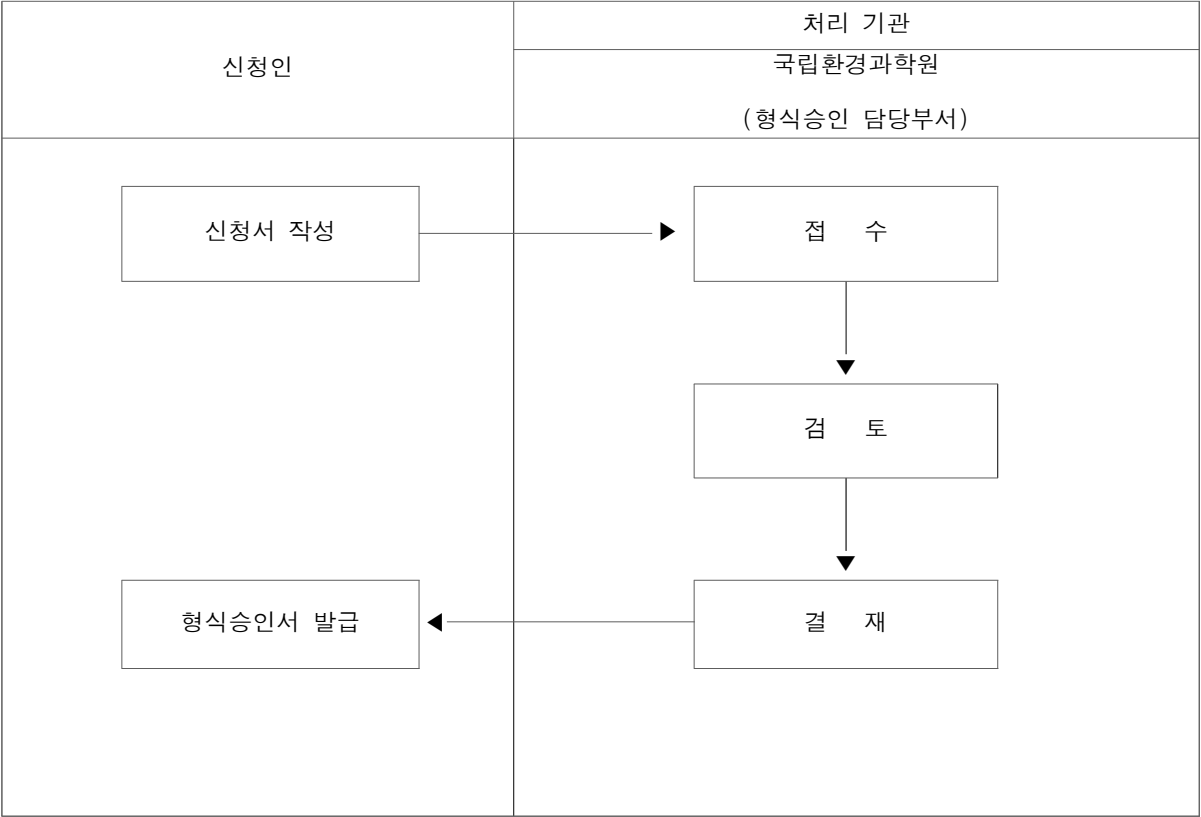
작성방법

- ⑤란 및 ⑥란은 수입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⑬란은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Instrument

receipt number	receipt date	process 7 days
----------------	--------------	----------------

[] vehicle [] soil [] air [] drinking water [] water [] indoor air quality [] noise • vibration

Applicant	① Vendor	
	② Name	③ Date of Birth
	④ Address	
	(Phone :)	
	⑤ Business address	
		(Phone :)
Applicant information	⑥ Company	⑦ Country
	⑧ Product	⑨ Type
	⑩ Model Name	⑪ Measuring range minimum : maximum :
	⑫ Minimum scale	⑬ Bias ±
	⑭ Method and Process	
	⑮ Change/Modification of type Approval	

I hereby apply for type/change approval as stated above under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Article 5 Section 2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

mm/dd/yyyy

applicant: name or signatur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Required documents (necessary documen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application purpose)	1. application for type approval a. documents describing products b. manual on process and performance c. performance test reports d. confirmation documents of measuring device software	2. application for change /modification approval a. type approval certificate or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b. document on modification c. performance test reports d. confirmation documents of measuring device software	application fee no fee in case of report
--	---	---	---

guideline for application form filling

- ⑥ and ⑦ are only for the case of import.
- please use another sheet of paper if ⑭ is not enou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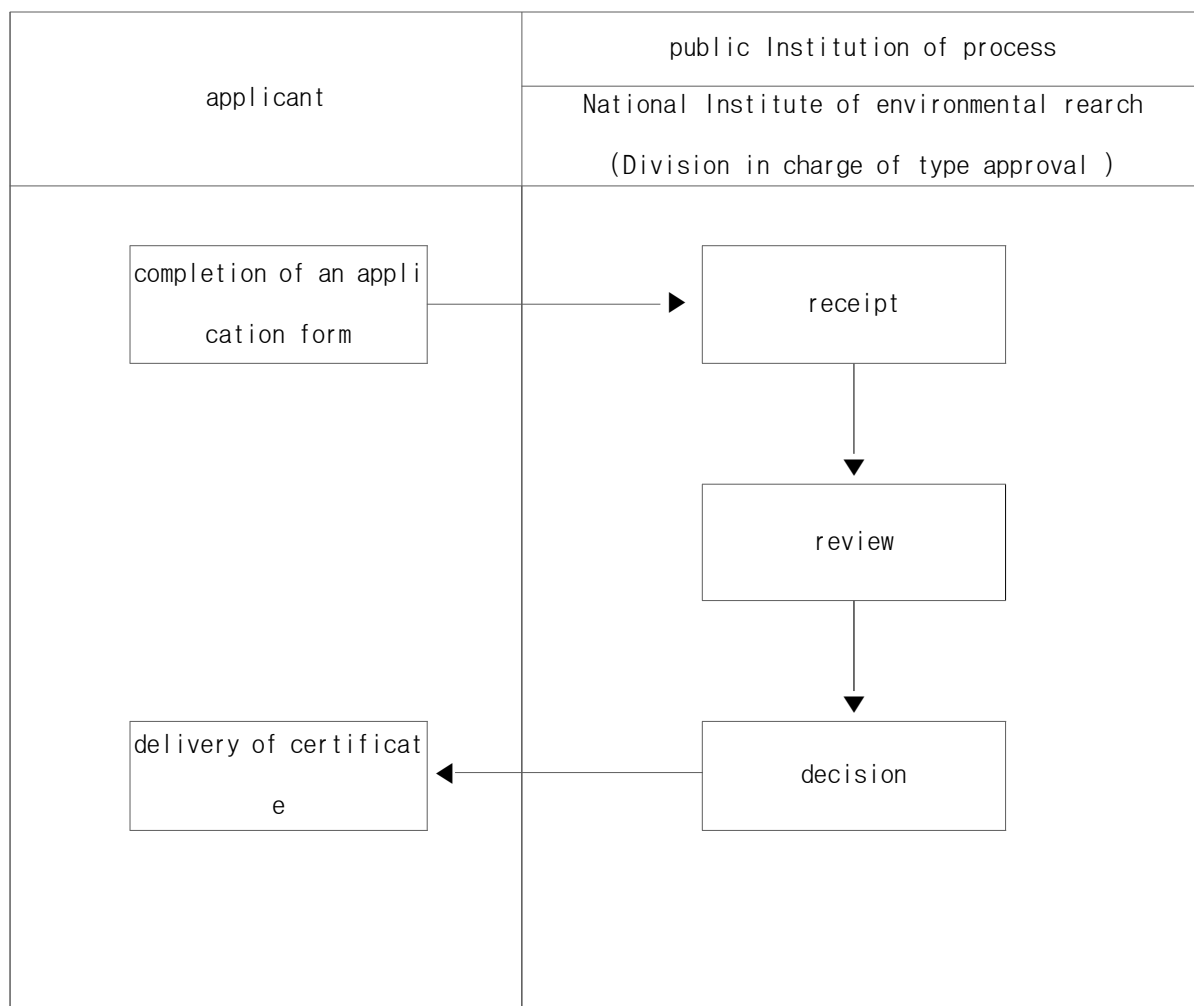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guidance)

(back)

process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following the steps bellow.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 소프트웨어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형식승인 []		변경승인 []	
예비형식승인 []			
① 점검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제조·수입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② 대상 측정기기	제조사/제조국	기기명칭/상품명(고유명칭)	
③ 점검 항목		④ 점검 결과	
1. 대상 측정기기의 사용 과정에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변수(이하 “상수·변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 전후의 상태와 변경일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로그기록이 생성된다.		Y [], N []	
2. 대상 측정기기에는 제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점검인이 제출하는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 기능이 없다.		Y [], N []	
3. 대상 측정기기에는 상수·변수나 측정결과를 정상적인 교정 이외의 방법으로 임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기능·장치가 없다.		Y [], N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 소프트웨어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점검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비 고
1. ①의 점검인은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기 위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2. ②의 대상 측정기기는 점검인이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측정기기를 말합니다.
3. ③의 점검 항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④의 점검 결과로 N[]에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측정기기 형식승인서

(앞쪽)

승인번호	제	호
------	---	---

신청인	상호 (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승인내용	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최소눈금 (단위)	공인측정오차범위 ±
	승인조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QR코드

<형식승인변경>

(뒤쪽)

연 월 일	변경사항	변경조건	근 거	확 인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Environmental Instrument

(front)

Certificate No		
Applicant	Vendor	
	Name	
	Address (Phone :)	
	Business address (Phone :)	
Approval information	Company	Country
	Product	Type
	Model Name	Measuring range minimum : maximum :
	Minimum scale (unit)	Bias ±
	Approval Conditions	

We certify type approval as stated above under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Article 5 Section 3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

mm/dd/yyyy

QR cod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제조 ☐ 수입 ☐ 승인 취소				측정기기 형식승인대장		승인번호	
						승인연월일	
상 호 (사업장 명칭)							
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전화번호 :)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형 식 승 인 사 항							
기기명칭	형 식	제작사	측정범위	최소 눈금	오차범위		
승인조건							
측정방법 및 원리							
형식승인 취소 사유		※ 형식승인이 취소된 측정기기에 대해서만 작성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자동차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토양 [] 먹는물 [] 실내공기질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형식승인번호	승인연월일
	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최소누금(단위)	공인측정오차범위 ±
	측정방법 및 원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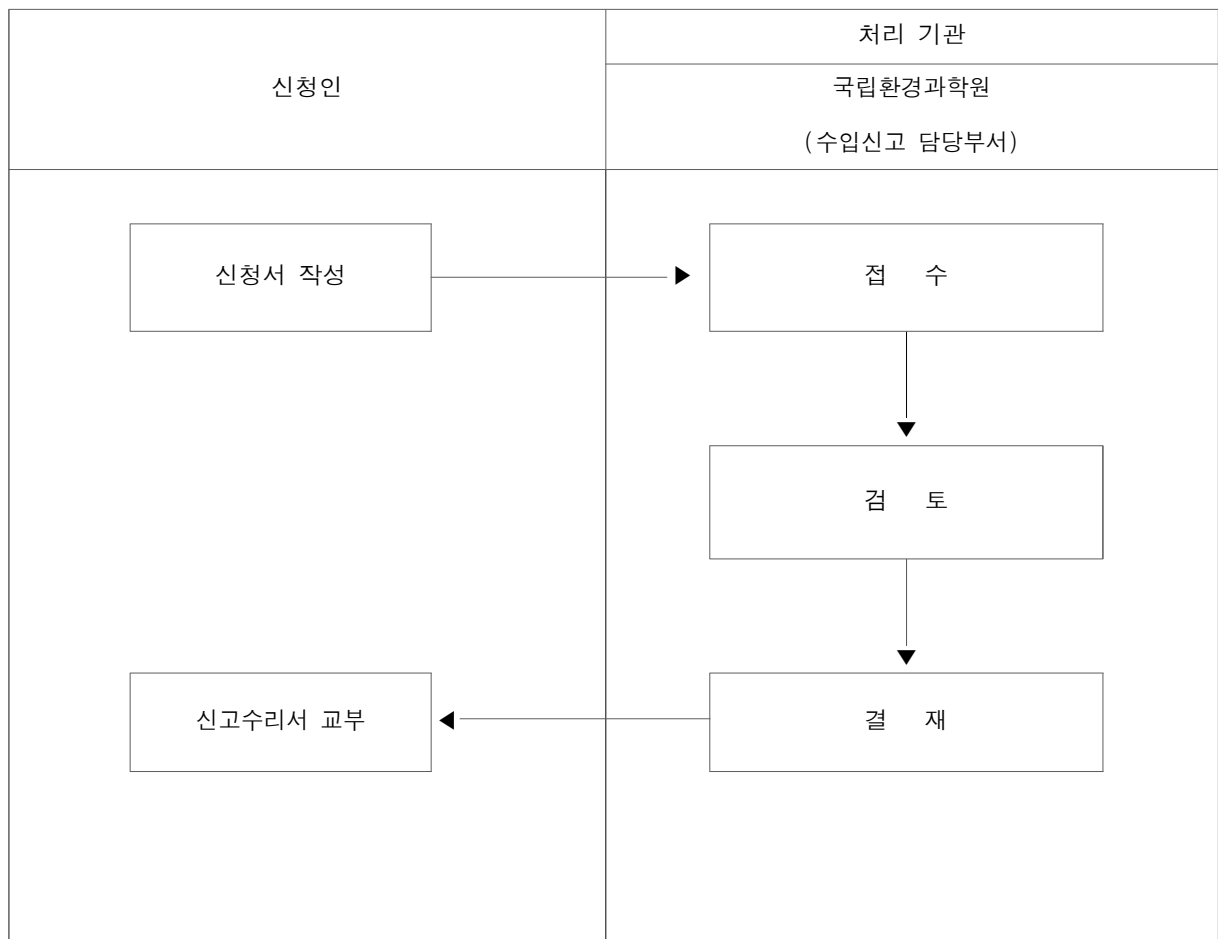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Instrument

(front)

receipt number	receipt date	process 7 days
----------------	--------------	----------------

[] vehicle [] soil [] air [] drinking water [] water [] indoor air quality [] noise・vibration

Applicant	Vendor	
	Name	date of birth
	Address (Phone :)	
	Business address (Phone :)	

Application information	Certificate No	Issue date
	Company	Country
	Product	Type
	Model Name	Measuring range minimum : maximum :
	Minimum scale	Bias ±
	Method and Principle	

I hereby declare the import of an environmental instrument as stated above under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Article 6 Section 1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
mm/dd/yyyy

applicant: name signatur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confirmation by an official>	application fee
a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A reporter submits a copy of the certificate if he/she doesn't agree to confirmation)	no fee in case of report 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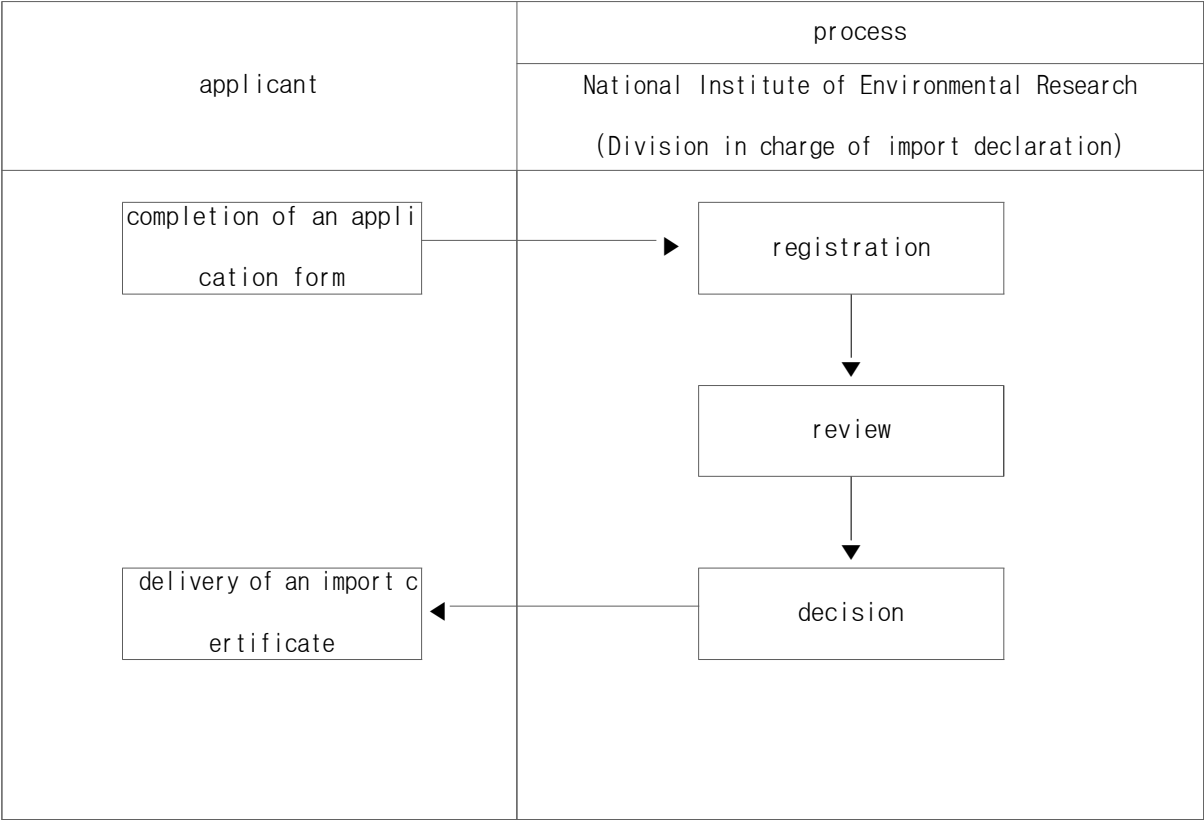
I hereby agree that an official concerned checks the information stated above through information-sharing under the Article 36 Section 1 of the E-Government Law.

applicant(name) signature

210mm×297mm[백상지 80g/㎡]

process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following the steps below.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수리서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인	상호 (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형식승인번호	승인연월일
	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최소눈금(단위)	공인측정오차범위 ±
	준수사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Acceptance for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Instrument

Declaration No.		
Applicant	Vendor	
	Name	
	Address (Phone :)	
	Business address (Phone :)	
Application information	Certificate No	Issue date
	Company	Country
	Product	Type
	Model Name	Measuring range minimum : maximum :
	Minimum scale	Bias ±
	Conditions	

We declared the import of an environmental instrument as stated above under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rticle 6 section 2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

mm / dd /yyyy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측정기기에비형식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규정
------	-----	------	------

[] 자동차 [] 대 기 [] 수 질 [] 소음·진동 [] 토 양 [] 먹는물 [] 실내공기질

신청인	① 상호 (사업장명칭)	
	②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⑥ 제작사	⑦ 제작국
	⑧ 기기명칭	⑨ 형 식
	⑩ 상품명 (고유명칭)	⑪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⑫ 최소누금(단위)	⑬ 공인측정오차범위 ±
	⑭ 측정방법 및 원리	
	⑮ 변경내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에 한함)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4.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 소프트웨어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신청시에는 없음
작성 방법		

- ⑥란 및 ⑦란은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⑭란은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

(앞쪽)

승인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 (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승인내용	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⑪ 최소눈금 (단위)	⑫ 공인측정오차범위	
	±		
⑬ 승인조건 : 신청인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형식승인을 신청해야 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

발급번호	예비승인번호	예비승인연월일
------	--------	---------

[] 제조 [] 수입

상호 (사업장명칭)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예비형식승인사항

기기명칭	형식	제작사	측정범위	최소검출한계	오차범위
예비승인조건 측정방법 및 원리					

측정기기 구매자

※ 본 구매자는 해당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향후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하였습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제조사	제조국가
	기기명칭	측정방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최대:
	최소누금(단위)	공인측정 오차범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인증번호 제 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상 호 (사업장 명칭)		
성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내용	제조사	제조국가
	기기명칭	측정방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최대:
	최소눈금(단위)	공인측정 오차범위 ±
	성능인증 등급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QR코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 정도검사	[] 검 정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	----------------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분야 또는 대상기기	⑦ 정도검사
	⑧ 검정
	⑨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⑩ 기술능력 확보 현황
	⑪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⑩란과 ⑪란은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 지정서
☐ 변경지정서

(앞쪽)

지정번호 제 호	접수일
---------------	-----

☐ 정도검사 분야 ☐ 검정 분야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분야 또는 대상기기	정도검사		
	검 정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지정조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지정번호 제 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검사분야 또는 대상기기 변경의 경우에는 20일)
---------------	-----	--

☐ 정도검사	☐ 검 정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사업장 명칭)	
	주소	(전화번호 :)

변경신청	변경내용
내용	변경사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 신청인 (서명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변경신청내용 기재사항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실내공기질 ☐ 약취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		
측정대행업	측정대행 항목		
	등록일자		
등록증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분실사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 3 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귀하

첨부서류	측정대행업 등록증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

처리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시·도 또는 대도시(측정대행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u> <u>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u> <u>1. 자동차 분야</u> <u>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u> <u>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u> <u>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u> <u>3) 원동기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메탄 · 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메탄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u> <u>4) 증발가스(탄화수소만 해당한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u>	<u>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u> <u>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는 별표 1의2와 같다.</u>

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
치와 그 부속기기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
기

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
기

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이산화탄
소 · 산소만 해당한다) 측
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
기 및 그 부속기기

3)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
탄소와 탄화수소만 해당
한다) 분석기, 공기과잉
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
기

4)

5) 매연측정용 비디오와 그
부속기기

6)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
정기와 그 부속기기

2. 대기 분야

가.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

질소산화물 · 일산화탄소
· 총 탄화수소 · 산소에만
해당한다) 측정기와 그 부
속기기

나.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 ·
질소산화물 · 염화수소 ·
불화수소 · 암모니아 · 일
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
메탄 · 산소 · 먼지에만 해
당한다) 자동측정기 · 유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다. 대기(이산화황 · 일산화탄
소 · 질소산화물 · 오존 ·
먼지에만 해당한다)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3. 수질 분야

가. 용존 산소 연속 자동측정
기와 그 부속기기

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
기기

라. 총 질소 연속 자동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마. 총 인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바. 총 유기탄소 연속 자동측
정기와 그 부속기기

사. 수소이온농도 연속 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아. 부유물질 연속 자동측정
기와 그 부속기기

4. 소음·진동 분야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나.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
기

5. 토양 분야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6. 먹는물 분야

가. 탁도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잔류염소 연속 자동측정
기와 그 부속기기

7. 실내공기질 분야

가. 실내공간 오염물질(포름
알데히드·미세먼지·휘
발성유기화합물·석면·
총부유세균만 해당한다)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
기

나. 실내공간 오염물질(포름
알데히드 · 미세먼지 · 일
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
오존 · 이산화질소 · 라돈
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
와 그 부속기기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
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
구조(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
다)

<신 설>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
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형식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
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지는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4항-----

-----.

1. · 2. (현행과 같음)

3. -----
----- 내부
구조

4.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을 위
한 소프트웨어(기존 소프트웨
어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등
을 포함한다)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
시) 법 제9조제5항-----

--- 붙여야 -----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신설>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별표 1의3과 --.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

-----.

② 법 제9조제7항-----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구동 및 운영 소프트웨어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이하 “측정기기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라 한다)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라. 측정기기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

③ -----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
----- 인
정되는 경우 -----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

--. 법 제10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 략)

3. 형식승인 연월일

4. (생 략)

⑤ (생 략)

<신 설>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 9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1. · 2. (현행과 같음)

3. 형식승인 연월일(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승인 취소일도 공고한다)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에 대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사실이나 별도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1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 9조제1항-----

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예비형식승인신청서에 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예비성능시험성적서

<신설>

4. (생략)

5. (생략)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5조제6항-----
--.

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측정기기 비공개 접속경로
자체 점검표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신제품이 다음 --

제품의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성능시험 방법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준과 성능시험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검사기관의 예비성능시험에
서 적합 승인을 받은 것일 것

3.·4. (생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수수료를 포함한다)이 마련되면 해당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성능시험 결과 예비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 위한 기준과 방법(성능시험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검사기관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 ---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 ---.

1. (현행과 같음)

<삭제>

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포함한 예비성능시험 성적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성적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해당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 성적서를 검토하여 해당 신제품이 예비형식승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 제4항-----

-----.

제6조의5(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란 별표 2의3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②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 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성능인
증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제
출해야 한다.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諸
元)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신
청을 받은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고 신청인에게 해당 등급
을 포함한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
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별표 2의5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잘 보일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⑤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법 제9
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립환경과학
원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 법 제
29조에 따라 해당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성능인증 검사기관은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1. 공개하려는 측정 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⑧ 그 밖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 방법, 성능인증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 및 성능인증 관련 수수료 납부 방

법 등 성능인증의 기준 · 방법 ·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의 기간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후의 정도검사기간은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도검사주기는 해당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

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 략)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는 하나에 해당하여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때 정도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도검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삭 제>

및 장비”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④ · ⑤ (생략)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5일(검사 분야 또는 대상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정도검사나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나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영 제10조제1항 -----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 -----
--. -----
-----.

제14조(측정대행업의 세부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
----- 영 제12조제1항 -----

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실험기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 ⑦ (생략)

⑧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생략)

<신설>

-----.

② 영 제12조제2항-----
----- 장비 -----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제7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

<u>제15조의3(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u> <u>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u> <u>가.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u> <u>나.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u> <u>2.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u> <u>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u> ① (생략) ② <u>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u>	<u>다)을 이용할 수 있다.</u> <u>제15조의3(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시기는 별표 9의2와 같다.</u> 1. 삭제 2. 삭제 <u>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u>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18조제3항</u>-----
--	---

과 같다.	-----.
제17조의6(시험·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 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제17조의6(시험·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 ----- ----- ----- -----.
1.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 분석사를 해당 분야에서 확보 한 시험·검사기관: 해당 분야 의 환경측정분석사	1.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2. 제1호 외의 시험·검사기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 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2. 영 제14조제1항----- ----- ----- ----- ----- -----
<신 설>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법 제 18조의5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 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 의4와 같다.
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① (생 략)	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u>제28호서식</u>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 ----- ----- ----- <u>별지 제28호서식</u>----- ----- -----. 1. ~ 3. (현행과 같음)
--	---